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 종 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12

발의연월일: 2021년 2월 일

발 의 자: 이종숙, 김동협, 송순효, 황영호 송영섭, 정정희, 김용원, 김현희 최동철, 신낙형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교육 운영, 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 교육의 유예, 불참자 관리, 교육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10조)

사.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2조, 제36조

나. 협조부서: 문화체육과

다. 입법예고: 2021. 2. 19. ~ 2. 24.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 운영)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을 위탁 실시 할 경우 수탁자는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로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교육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2. 18.>

③ 삭제 <2018. 2. 21.>

④ 삭제 <2018. 2. 21.>

⑤ 삭제 <2018. 2. 21.>